



Providing Excellence In Client Services

월간 뉴스레터

2016년 3월호

Monthly Newsletter of Hanul Choongjung LLC

Contents

회계정보

- 외부감사인 선임, 변경 및 지정관련 유의사항(금융감독원, 2015.12)

세무정보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 /관리회계/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위 규모이며, Global Top 10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Horwath International의 한국 Member Firm입니다.]

한울회계법인 Hanul Choongjung LLC 의 Newsletter 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연락처

한울회계법인
Hanul Choongjung LLC
Member Crowe Horwath International

전화번호 : 02-316-6659(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horwath.co.kr

Website : www.crowehorwath.co.kr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5~8층, 10층 (우: 06179)

QRM 본부
02 - 2009 - 5718
회계소식 등
외부감사인 선임, 변경 및 지정관련 유의사항(금융감독원, 2015.12)
외부감사인 선임
유의사항
■ 외부감사인 선임 유의사항

외감법 제4조 제1항 및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며,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사인을 강제 지정함.**

■ 2014년 외감법 개정내용

- (변경전) 감사인 미선임 기업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요구 → 감사인 지정전 감사계약보고 또는 외감제외 사유 발생입증시 지정제외
- (변경후) 감사인 미선임 기업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요구 → 외감제외 사유 발생입증만 지정제외

따라서,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4개월을 경과하여 선임한 경우 모두 지정대상이므로 반드시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함

감사인 강제지정
유의
■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시 주의할 사항(회사): 감사인 강제지정 유의

1. 각종서류(특히, 외부감사계약서)상의 날짜 누락: 년, 월만 기록하는 경우가 많음
2. 감사인 변경 시 외부감사인 교체사유서 누락: “회사가” 교체사유를 간략히 기재하여 제출하면 됨)
3. 해당 회사의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 대상 여부 확인 필수
→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 누락시 감사인 지정되므로 매우 중요
4. 전기감사인 교체 동의서(적정 이외의 의견을 준 감사인을 교체할 경우만 필요) 누락
→ 누락시 감사인 지정되므로 매우 중요
5. 법인직인누락(‘직인생략’ 표시는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직인 날인)
6. 공문상 연락처 최신화(업무 담당자 이름과 “직통번호”를 기입할 것)
7. 감사(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서 날짜가 감사계약서 일자보다 빨라야 함.
8. 비상장회사가 전기와 동일한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서류제출 불필요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FAQ
■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FAQ(금융감독원 회계포탈 참조 - <http://acct.fss.or.kr>)

- 선임보고와 감사(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절차가 생략 가능한 경우(회사)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선임보고와 감사(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

2. 상장법인이 아닌 회사가 직전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선임한 경우

※ 2번 사유로 선임보고를 생략하는 회사의 경우, '소유·경영 미분리 및 자산1천억 이상 비상장회사' 조건에 최초로 해당이 되는 사업연도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은 거쳐야 합니다 → (선임보고: X,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 : O)

-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하는 경우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1. 주권상장법인(코스피, 코스닥 및 코넥스)
 2. 직전사업연도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회사 중 소유와 경영이 미분리된 회사
(※ 소유경영 미분리: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직전 사업연도말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이고,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가 회사의 대표이사인 경우)

- 감사인 선임사실의 정기총회 보고의무
전기감사인 재선임 등의 사유로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감사인 선임사실을 선임한 연도 정기총회에 보고해야 됩니다.

 ※ 정기총회에 보고하지 못한 경우, 아래 중 하나의 방식으로 주주에게 보고합니다.
 - ①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의 주주 기준)
 - ②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주주에게 공고(감사대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공고 유지)

-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위원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어떻게 구성하나요?
채권금융기관이나, 기관투자자 등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으로 구성하면 됩니다.

- 상장법인의 감사인 선임기간인 3개 사업연도가 모두 종료되기 전에(1개 또는 2개 사업연도 종료 후 시점에)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회사가 1번째 또는 2번째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1. 감사인이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3. 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4. 외자도입계약 등에서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5. 감리결과 감사인이 영업취소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감사인이 1번째 또는 2번째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1. 감사인이 감사의견과 관련하여 회사·주주·채권자로부터 부당한 요구나 압력을 받은 경우

■ 사업연도 중에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회사의 감사받을 권리와 감사인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중 감사인을 교체하실 수 없으며, 외감법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감사인이 계약해지에 상호합의하셨다 하더라도 외감법 제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서 정하는 회계법인 파산, 등록취소, 업무정지나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 등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사업연도 중에는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 부채비율 과다 상장법인은 감사인 지정대상으로 추가되었는데 업종구분은 어떻게 하나?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르므로 통계청 고시에 따름.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는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산업을 결정하고, 주된 산업활동은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중에서 부가가치액이 가장 큰 활동으로 규정함.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업은 지배회사의 업종으로 분류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한국거래소에 등록되어 있는 업종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 한국거래소에 등록된 업종과 다른 업종을 재무사항신고서(사업보고서 제출기한까지 제출)에 기재하였을 경우, 추가자료 제출 등을 통해 업종이 변경되었음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함.

■ 사업연도 중 지배회사가 바뀌어 새로운 지배회사와 감사인 일치 를 위하여 감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가?

외감법에서는 감사계약 체결 기간 중에는 회사의 감사계약 해지권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합의 해지도 불가). 따라서, 사업연도 중 감사인 교체는 감사계약 해지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감사인 지정을 통하여 감사인을 교체할 수는 없음.

- 재지정 요청사유 중 '외자도입계약 등에서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요건은?
회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자는 법인이어야 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자의 종속회사이거나 지분법적용피투자회사에 해당되어야 함. 또한, 외국인투자자와 체결된 외자도입계약 등에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감사인을 지정받은 기업이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법원의 허가를 득하여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가?
감사인 지정대상이 회생절차 진행중인 경우 지정일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은 감사인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공문으로 요구)하는 경우 및 지정일로부터 2주 이내에 법원이 허가를 받은 감사인으로 재지정을 요청(공문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수용

- 지정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중인 비상장법인(소멸법인)과 자유수임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중인 상장법인(존속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할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의 감사인은 누구인지?
상법 235조와 과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피합병 되어 소멸되는 법인의 지정감사의무 또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승계됨.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00

세 무 정 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1. 독립세 방식으로 개편

종전에는 신고·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 왔으나 2014년 이후 소득 발생분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지방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세액공제·감면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공제·감면하고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종 전 <부가세 방식>	변 경 <독립세 방식>
국세 결정세액 × 부가세율(10%) => 지방소득세	국세 과세표준 × 지방소득세율 - 공제·감면 => 지방소득세

2. 납세의무자

◦ 관내에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3.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액과 동일한 금액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구분	과세표준	세율
주요내용	법인소득분 (누진세율)	2 억원 이하	과세표준 × 1%
		2 억원 초과 200 억원 이하	20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2%
		200 억원 초과	3억9,800만원+200억원 초과금액의 2.2%
	양도소득 과세특례	부동산 양도시 표준세율로 산정한 세액에 특례에서 정한 각 세율로 산정한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	
	특별징수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액× 10%	

3. 납부방법

- 법인소득분 신고·납부 :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 이내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종전과 같은 부가세방식을 유지하되, 2015.1.1.부
터 내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경우 특별징수하여 납부하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지법 §103조의29]

업 무 소 개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 ▪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 ▪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 ▪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 ▪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 ▪ 조직, 인사 전략 / HR ▪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 ▪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 ▪ M&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 ▪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 ▪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 ▪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 ▪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 ▪ PI / CRM / Risk Management 등 |
|--|---|

문의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
 TEL: (02) 316-6659, FAX: (02) 775-5885, E-mail: secretary@crowehorwath.co.kr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Choongjung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Choongjung LLC is a member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a Swiss association. Each member firm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Choongjung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or any other Crowe Horwath International member.